

튜닝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차명		형식	
	원동기형식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튜닝 사항	튜닝 항목	튜닝 전	튜닝 후	
	길이×너비×높이			
	차량총중량			
	장치(장치명칭 기재)			
	자동차의 유형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2. 튜닝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검사대행자가
	3.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1부	정한 금액

유의사항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 승인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반드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에서 튜닝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승인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원동기 등 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튜닝항목 장치란에 튜닝하는 장치명을 적습니다.
-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와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 및 제20호).